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729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이주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1가합59297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2022. 3. 30., 2024. 1. 2. 각 폐문부재, 2024. 1. 27. 기타송달불능, 2024. 2. 18. 수취인부재로 각 송달불능이 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이 2024. 3. 7.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5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한 후 2025. 2. 14.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2025. 2.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5. 3. 7. X은행의 예금압류 알림톡을 받은 후 2025. 3. 1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다.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위 알림톡을 받은 2025. 3. 7.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심에서 고의로 소송서류 수령을 회피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인 사실을 어느 시점부터인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1]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피고가 추완항소장에 첨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피고에게 처음 소장 부본 송달이 시도된 무렵 피고는 해외에 있었다), 피고가 제1심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을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앞서 본 2025. 3. 7.자 X은행의 예금압류 알림톡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제1심판결의 선고 외에 그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수정하고, 아래 다.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나. 수정하는 부분

1) 피고의 2025. 8. 6.자 준비서면(두 번째) 7면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 4면 4행의 맨 뒤에 각주로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존에 청구했던 저작재산권(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위자료 청구까지 추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를 추가한다.

○ 6면 15행의 "저작권상"을 "저작권법상"으로 고쳐 쓴다.

다.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침해사진[2]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가)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침해사진의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원본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계속 다투어 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침해사진의 원본파일인 jpg 파일 및 이를 보정, 편집한 포토샵 PSD 파일(갑 제72호증), 위 각 파일의 상세정보를 컴퓨터에서 확인하고 포토샵 작업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갑 제79호증), 이 사건 침해사진의 모델 및 촬영자(포토그래퍼)에게 이 사건 침해사진에 관한 작업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73, 74호증), 모델과 촬영자, 스타일리스트 등과의 통장거래내역(갑 제75 내지 77호증)[3]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피고는 특히 원고가 제출한 jpg 파일이 그 용량 등에 비추어 원본파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나, 갑 제7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침해사진을 촬영한 Y은 '파일을 메일로 전송했어서 용량이 너무 크니까 jpg로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거의 jpg로 촬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침해사진의 촬영 당시 이 사건 원피스의 광고 사진 촬영을 위하여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모델과 촬영자 등을 섭외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침해사진의 촬영을 의뢰한 사

2) 이 사건 각 사진(제1심판결 별지4 기재 각 사진) 중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들(3, 5, 6, 7, 8번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을 뜻한다.
3) 한편, 원고는 서증번호를 붙이지는 않았으나 2025. 9. 26.자 증거자료 제출서에 첨부하여 위 모델과 촬영자 등에 대한 2015. 12. 22.~24.경 입금증도 제출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실이 인정되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촬영자로부터 이 사건 침해사진을 전달받아 2015년경부터 원고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왔으며, 원고와 촬영자 사이의 2025. 12. 9.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7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촬영자는 원고가 이 사건 침해사진을 계속 이용해 온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촬영자에게 이 사건 침해사진의 촬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원본파일을 인도받을 당시 촬영자로부터 그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양수하기로 촬영자와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침해사진[4]을 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가) 피고는 2019. 1.경 거래처인 중국 공장(중국 심천시 Z 의류공장)을 통해서 이 사건 침해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침해사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을 제19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중국 공장으로부터 받은 수권서의 내용은 '피고가 운영하는 AA(인터넷주소 1 생략)에게 위 공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페이지 그림의 사용권한을 위임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침해사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위 수권서가 이 사건 침해사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침해사진의 저작권자인 원고가 위 중국 공장에 이 사건 침해사진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 수권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침해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가 이용한 것은 이 사건 침해사진 중 4, 9, 22번 사진인바, 이 항목에서 이 사건 침해사진은 4, 9, 22번 사진을 뜻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나)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위와 같이 중국 공장과 정식 이미지 수권계약을 체결하고 수권서를 교부받았고 그 수권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원고의 복제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설령 위 수권서를 통해 중국 공장이 사용권한을 위임한 페이지 그림이 이 사건 침해사진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권서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공장을 상대로 중국 공장이 이 사건 침해사진을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을 제28호증(위챗대화내역)은 정확한 대화 시점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대화에서 상대방의 간략한 답변을 만연히 믿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침해사진의 저작권 내지 이용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이 사건 침해사진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로 인해 도매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문의가 수차례 이루어졌을 때에도 자신이 받은 위 수권서만을 강조했을 뿐 이 사건 침해사진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침해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데에는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위 수권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나, 서류의 공증 절차에서 저작권의 권리관계 확인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액의 적정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하는 주장을 종합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4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500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현

판사 강성훈

판사 송혜정